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대검찰청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한국전산
감리원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5. 08. 11.
~
2025. 09. 19.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□ 1천만원 미만
■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□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□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□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 사업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
변경 일정</td><td>2025.08.04. ~
2025.12.02.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
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- 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업무 편의성 제고
- 표준화된 기술 도입과 개인정보 안전성 기능개선으로 보안성 강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50만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, 100만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됨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211,200천원
(부가세 포함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대검찰청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2025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□ 신규 구축
■ 변경(고도화)
□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
유형</td><td colspan="4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출입통제시스템 장비 교체 및 이중화에 따른 상용SW 신규 설치 · 이관
• 다양한 운영체계 및 웹 브라우징 환경 호환성을 확보하여 사용자 업무환경 반영
• 사용자 로그인 등 기존 출입통제시스템 기능 및 요구사항 개선
• 출입통제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변경내용
(변경인 경우)</td><td colspan="6">○ 대상기관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'2025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' 추진 목적으로 '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 사업'의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함.
○ 따라서, 『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』 제35조(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)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가 변경된 출입통제시스템의 장비 교체 및 이중화에 따른 상용SW 신규 설치나 이관, 다양한 운영체계 및 웹 브라우징 환경 호환성을 확보하여 사용자 업무환경 반영, 사용자 로그인 등 기존 출입통제시스템 기능 및 요구사항 개선 및 출입통제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등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을 영향평가 범위로 하여 수행함.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 주체 수</td><td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삼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출입통제사용자 및 관리자 명단</td><td>716,617건
(2025.8월 기준)</td><td>- 필수 수집 :
이름, 생년월일, 핸드폰(연락처), ID, 소속
- 선택 수집 : 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출입자나 관리자 관리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</td><td colspan="4">■ 개인정보 처리 분석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
■ 개인정보 흐름표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
■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 colspan="4"><table><tr><td>지표추가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<tr><td>지표변경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<tr><td>지표삭제</td><td>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: 6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 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 colspan="4">○ 대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은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내·외부로 연계를 하거나,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의 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이 됨.

○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예방을 목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며 "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가이드"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함.

○ 평가대상 시스템 및 업무 관련 근거 법령
-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(2021.1.1. 시행)
-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(2023.1.31. 시행)
- 법무부령 검찰보존사무규칙(2024.9.11. 시행)
-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(법무부훈령 제1348호, 2021.3.29. 시행)
-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(2024.12.26. 시행)
-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(2025.9.12. 시행)
○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
- 개인정보 보호법(2024.03.15. 시행)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(2024.09.15. 시행)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2023.09.22. 시행)
-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2023.10.16. 시행)
-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2024.0104. 시행)
-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2024.10.31. 시행)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(2024.04.02. 시행)
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4.04. 개정)
-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(2024.04. 개정)</td></tr>
</table>

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	**1.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** • 개인정보보호 조직, 개인정보보호 계획, 개인정보 침해 대응, 정보주체 권리보장,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음.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보유, 위탁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음.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, 접근 통제, 개인정보의 암호화,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, 물리적 접근 방지,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,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. **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사항에 따른 분석평가** • [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사항]

구분	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
수집·이용	-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하고 있음
보유	- 법무부령인 「검찰보존사무규칙」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정 기준에 근거하여 보유기간 산정
위탁	-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상시적인 위탁업무는 없으나, 고도화 사업 개발업체와 위수탁계약 체결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
파기	-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파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음

• [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사항]
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에 대한 통합관리 및 백업시스템 운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.
-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,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시 문서DRM 및 보안USB를 적용하고 있음.
-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은 G-SSL을 적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·수신 시 개인정보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음.

3.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사항

-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 없이 공개되어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,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침해 여지가 있음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방안</td>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개선과제</th><th>개선내용</th></tr>
<tr><td>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</td><td>동의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근거의 구분 공개(3.1.9)</td><td>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</td><td>해당 없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
○ 평가항목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

• 대검찰청 출입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항목 77개 중 이행 항목 60개, 부분이행 항목 1개, 미이행 항목 0개, 해당없음 16개 항목으로 평가되어 전체 영향평가 이행률은 99%로 나타남.

○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결과

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9개, 해당없음 항목 1개로 평가되어 적절한 보호조치를 계획 및 이행하고 있음.

○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결과

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6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6개로 평가되어 적절한 보호조치를 계획 및 이행하고 있음.

○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

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25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13개, 해당없음 항목 11개, 부분이행 항목 1개로 평가되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식별됨.

○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결과

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36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32개, 해당없음 항목 4개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계획 및 이행하고 있음.

○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

• 평가 제외

도출된 침해요인은 장기 개선 가능한 사항 1건으로 수행시기와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침해가 없도록 기관 자체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함.
</td></tr>
</table>